

창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가단1275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이창희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257,770원 및 그중 16,267,387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2023. 1. 3.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9.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 12. 23. 접수 제52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74.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9.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21. 10. 2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21. 11. 3.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 D금융센터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21. 9. 3.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22. 1.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5. 10.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6,267,38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990,383원이다.

마. 피고들은 2022. 8. 2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17,257,770원(=대출원리금 16,267,387원+가지급금 990,383원) 및 그중 위 대출원리금 16,267,38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5. 1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3. 1. 3.까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② 원고 외에 다른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도 이 사건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일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앞서 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었던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A에게 예금 등 다른 적극재산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 A은 원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부부이었음에도 피고 B는 그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들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관계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청산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해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계약은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 주장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을 재산분할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 B는 “피고 A과 혼인은 하였지만 애정이 없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혼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별거 및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모텔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2억 원 이상을 피고 B의 친정 부모님 지참금으로 조달하였고, 영업이 안정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1억 원 정도를 피고 A으로부터 받아 위 돈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주위에서 다들 남편 명의로 등기하라는 권유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1988.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텔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 A과 별거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A 및 피고들의 자녀인 E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의 자녀들은 F생 및 G생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만 45세, 만 42세이고, 협의이혼 당시 만 46세, 만 43세인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혼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고 보기에 혼인관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였고, 공교롭게도 피고 A의 경제사정 악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염려가 구체화 되어가는 무렵에 이 사건 계약과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 B는 별거 및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서 그 구입비용의 약 1/3을 피고 A으로부터 조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 A 앞으로 한 것은 서로 모순되고, 심지어 2001. 9. 20., 2004. 9. 20. 및 2003. 12. 15. 피고 A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③ 피고 B는 애정이 없어 장차 이혼하기로 하였다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에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그 이유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B는 모텔영업이 안정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조달된 피고 A의 돈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5년 이후 피고 B가 피고 A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636,063,983원임에 반해 피고 A가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454,419,000원이고, 2007년 이후 피고 B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피고 A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400,410,613원이어서 피고 B가 합계 582,055,596원을 초과하여 피고 A에게 송금한 사실을 통해 위 1억 원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들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내역이 위 1억 원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⑤ 피고들 사이에 돈이 오간 횟수,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피고 A와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은 믿기 어렵고, 피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H 주식회사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32호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3. 3. 8. “이 사건 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그 명의를 피고 B에게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거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H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제10호증).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피고 B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명의신탁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① 협의이혼 신고는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계약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재산분할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다루어졌을 법한 구체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내역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피고 B는 충분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기에 기재된 대로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를 개설한 이후 피고 A과 별거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상호 만남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위험이 발생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들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으면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 B가 피고 A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